

인천지방법원 2022. 7. 27 선고 2019가단216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종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국

변론 종결 2022. 6. 22.

판결 선고 2022.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 11. 8. 접수 제413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3. C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304,510,000원(= 2017. 10. 13.자 대여금 120,000,000원 + 원고와 C이 2018. 2. 23.자로 확인한 미수 유류대금 184,5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의 금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66537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8. 선고 2020나13838 판결].

다. 피고는 1998. 4.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7. 11. 8. 인천가정법원 2017호협7455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8. 2. 8.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C은 2017. 11.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2017. 11.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양도받은 것이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전인 2017. 10. 13. C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고는 2018. 1. 24. C에게 추가로 53,1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C은 1998. 4. 15.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8. 11. 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② C과 피고는 2018. 2. 8.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인 2008. 6. 12. 취득한 것인 사실, ④ 피고는 2017. 8.경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C과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와 C의 혼인기간,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아래와 같은 토지 또는 그 지분(시가 합계 161,562,332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6,000,000원의 신용대출금 채무, D 주식회사에 대한 21,315,000원의 카드론 채무, 기업은행, E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합계 1,375,915,000원 등이 있었다.

1	정읍시 F 토지의 1/3 지분
2	정읍시 G 토지
3	정읍시 H 토지의 1/3 지분
4	정읍시 I 토지
5	정읍시 J 토지
6	정읍시 K 토지
7	정읍시 L 토지
8	정읍시 M 토지
9	정읍시 N 토지
10	정읍시 O 토지

② 피고는 C와 혼인기간 중인 2000. 2. 25.경 인천 부평구 P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이래 소유하였고, 이후 위 토지 및 건물이 Q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면서 2017. 11.경 아파트 분양권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분양권 가액은 246,305,300원 상당이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 177,240,000원)를 부담하였다.

③ 피고는 C와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곳이다.

④ C의 소극재산 중 1,375,915,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는 C이 주식회사 R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피고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은엽

별지